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상위 관련법에 의거 추가, 신설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향상코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 추가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증 소유한 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50% 감액 (안 제13조3호)

○ 체육시설 이용자 감면대상 신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증 소유한 자에 대한 시설 사용료 50% 감액 (안 제13조6호)
- 특수임무부상자 및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에게 시설 사용료 50%감액 (안 제13조7호)

○ 중복 감액 적용 요구에 따른 민원 해소

- 감액기준이 중복될 경우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명문화 (안 제13조8호)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로 하고 “배우자”를 “유족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제13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8.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감액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3조(사용료의 감액) (생략) 1.~2.(생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1~3급 동행인 1인),국가유공자(배우자, 상이등급 1급동행자 1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4.~5.(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3조(사용료의 감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유족중 소지한 자, 상이등급 1급동행자 1인)... 4.~5.(현행과 같음)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중, 특수임무부상자유족중, 특수임무공로자중,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8.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감액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이 가장 많은 것 하나만 적용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관련법에 의거 신설 · 관련법에 의거 신설 · 중복적용 요구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

관 련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과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20]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

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8조의 3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

2. 법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별표 3] 입장료가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제10조의3제1항 관련)

면제시설	1. 고궁 2. 능원 3. 전쟁기념관 4. 국공립 수목원 5. 국공립 휴양림 6. 국공립 박물관 7. 국공립 공원 8. 국공립 미술관 9. 국공립 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
------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4]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타시도 참고자료

※ 전국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감면 현황

자 치 단 체 명	감 면 현 황					비고
	국 가 유공자	독 립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환 자	특수임무 수행자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	×	×	×	×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	×	×	×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	×	×	×	×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	×	×	×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	×	×	×	×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	×	×	×	×	
삼척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	×	×	×	×	

※ 전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감면 현황

자 치 단 체 명	감 면 현 황					비고
	국 가 유공자	독 립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환 자	특수임무 수행자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	×	×	×	×	
서울종로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	×	×	×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 운영조례	○	○	○	×	×	
경기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 조례	×	×	×	×	×	
전북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 조례	○	○	○	○	○	